

성희롱및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국제예술대학교(이하 ‘우리 대학’ 이라 한다)의 구성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(시간강사, 임시직 포함)으로 하며, 피신고자 및 피해자만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.

제3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‘성희롱’ 이라 함은 업무, 교육, 연구 및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,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.
2. ‘성폭력’ 이라 함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4조 (성희롱 예방교육 실시) 우리 대학은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
제5조 (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) ①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교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무처장,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수 2인, 직원 2인, 학생 2인으로 구성하며, 전체 위원 수 중 여성이 50% 이상 70% 미만인 되도록 구성한다. 단, 학생위원은 학생관련 사안에만 참석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심의
2.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의 조사, 심의 및 시정 권고
3. 성폭력 사안에 대한 징계 권고
4.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
5. 기타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

⑤ 위원회는 교내에 ‘성희롱상담실’을 두고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.

1.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2.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신고의 접수
3.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

4.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의 의심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상담
5. 기타 위원회의 위임사항
- ⑥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

제6조 (성희롱 및 성폭력 시정신청)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는 위원회에 이 규정에 의한 시정을 신청 할 수 있다.

제7조 (성희롱 및 성폭력 조사) ① 위원회는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시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당해 성희롱 및 성폭력에 의한 피해의 원인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
 2. 성희롱 및 성폭력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
 3.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
 4. 기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접수된 성희롱 및 성폭력 사항에 관하여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,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 (의견제출 기회 부여) 위원회가 성희롱 및 성폭력 시정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, 피신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9조 (위원회의 시정 등 권고) ① 위원회는 성희롱 시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총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의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회는 성폭력 시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총장에게 가해자의 징계를 건의하여야 한다.

제10조 (결정의 통지) 위원회가 성희롱 및 성폭력의 시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이의신청) ①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붙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2조 (사건 관계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) ①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관계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.

②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사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관계자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유언비어 또는 미결 사항에 대한 내용을 유포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 (시행세칙)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